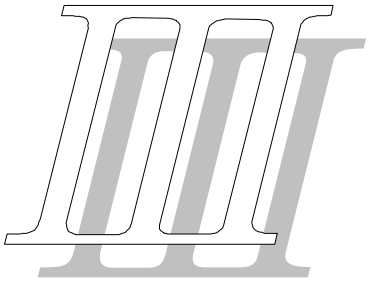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CONTENTS

1 민간부문 시행지침	3
2 공공부문 시행지침	27

1 민간부문 시행지침

1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본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이하'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표시되지 아니한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규정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건축물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민간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법규나 조례, 지침 등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②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에서 추구하는 설계 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③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 내지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현행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2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를 따른다.

⑤ 다만 제④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세부 건축계획 때 획지 간 공동개발 및 공동건축의 해제·조정 등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본 지침 제31조제③항에 의한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항에서 정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향후 관련법규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개정 또는 변경된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

⑦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대지에 관한 사항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①항에 따라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이며,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② '가구(블록)'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목적상 세분화된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구역'을 말한다.

③ 기타 용어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에서 설명한다.

제4조 단위대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지단위를 대지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개별 필지단위 건축
   - 기존 건축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입지한 경우 하나의 필지로 인정

제5조 개발규모

① 본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규모'라 함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공동개발'이라 함은 2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율적 공동개발'이라 함은 최대개발규모 범위 안에서 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2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2필지 이상의 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을 허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1. 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 때 기존 골목길을 포함한 경우
2. 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에 의한 대지의 규모가 과소하거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게 되어 개발이 불합리 하거나 인접필지에 맹지가 발생하는 경우

③ 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로 서로 다른 지침을 적용받는 필지 간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 제31조제③항에 의한 원칙을 따라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3장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1절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6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4장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도입 가능한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해 허용된 용도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2.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4장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 도입 가능한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제6조의2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각 구역별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를 따르며, 인접한 지역에 문화재 등이 있어 관련법에 의해 개별심의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건축물밀도에 관한 사항

제7조 건폐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각 필지의 건폐율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용적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각 구역별 필지의 용적률은 당해 결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지침 제8조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 제공 및 공개공지 추가 제공 등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절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제9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높이'라 함은 당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말한다.
2. '최고층수'라 함은 당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층수를 말하며, 최고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제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또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타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규정하는 최고층수 및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 하며, 거북선대교 남단, 돌산대교 주변은 최고높이 외에 용도지구에서 정한 교량상판 하부 미만을 따른다.

② 최고층수와 최고높이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수와 높이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산정기준은 '건축법'을 따르도록 한다.

③ 각 구역에 속한 각각의 필지들의 높이는 최고층수 및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④ 인접한 지역에 문화재 등이 있어 관련법에 의해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높이제한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높이보다 강화된 기준일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높이계획

구 분		최고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주거관리 구역	A1, A2, A3	12m	3층	시가지경관지구
	A4	-	4층	
	A5-1	- (12m)	- (3층)	( ): 시가지경관지구
	A5-2	-	-	
	A6	20m	-	최고고도지구
상업활성화 구역	B1	- (20m)	-	( ): 최고고도지구
	B2-1, B2-2	- (13m, 20m)	-	( ): 최고고도지구
	B3	- (13m, 20m)	-	( ): 최고고도지구
	B4-1, B4-2	-	-	
관광기능유도 구역	C1	12m, 16m, 20m	-	최고고도지구
	C2	12m, 16m, 20m	-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 구역	D1, D2	12m	4층	최고고도지구
	D3	12m	3층	수변경관지구

※ A4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제4절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건물의 방향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여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한다.

제12조 주거관리구역 내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를 위한 건축물의 배치

① 공동개발을 위한 합필 때 부지 내 골목길(옛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골목길(옛길)의 형태를 유지하고, 골목길(옛길)의 방향에 일치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부득이하게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후퇴하여 건축할 경우, 기존의 골목길(옛길) 및 도시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선 또는 대지경계선에 단차가 없는 경계석 설치를 권장한다.

제4장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주차장의 설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본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차량 출입을 위한 진입로가 보행가로를 단절하는 경우 그 진입로는 보행가로의 패턴을 연장하여 동일한 재료로 포장하고 단차를 없이하여 보행자 통행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③ 옥외주차장 설치 때에는 최소한의 진·출입구를 제외한 가로변에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차폐시설과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록, 석재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권장하며, 불투수 포장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녹지대 등을 도입하여 투수 면적을 확보한다.

④ 대규모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보행편의를 위하여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개설, 횡단보도 위치 정비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해야하며, 일반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규 및 조례가 개정 될 경우에는 해당 법규 및 조례를 따른다.

제5장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제14조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기준의 적용 원칙

① 건축물에 대한 형태, 색채 및 외관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재축, 개축, 증축, 대수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주 건축물 외에 기타 공작물, 부속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에도 적용한다.

② 해당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각 구역별로 적용하는 '구역별 지침'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이를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역별 지침은 '주거관리구역(A1, A2, A6)', '주거관리구역(A3, A4, A5-1)', '주거관리구역(A5-2)', '상업활성화구역(B1, B3)', '상업활성화구역(B2-1, B4-1)', '상업활성화구역(B2-2, B2-4)', '관광기능유도구역(C1, C2)' 및 '자연경관구역(D1, D2, D3)'내 필지에 적용한다.

④ 색채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주조색(배색의 기본이 되는 색, 색채 면적의 70%이상), 보조색(주조색을 보완하는 색, 색채 면적의 약20%), 강조색(포인트 역할을 하는 색, 색채면적의 10%이하를 차지하는 색)으로 분류하고 권역 및 구역에 따라 색상범위를 지정하여 색채의 지역적 특성을 부여한다.

권역별, 구역별 색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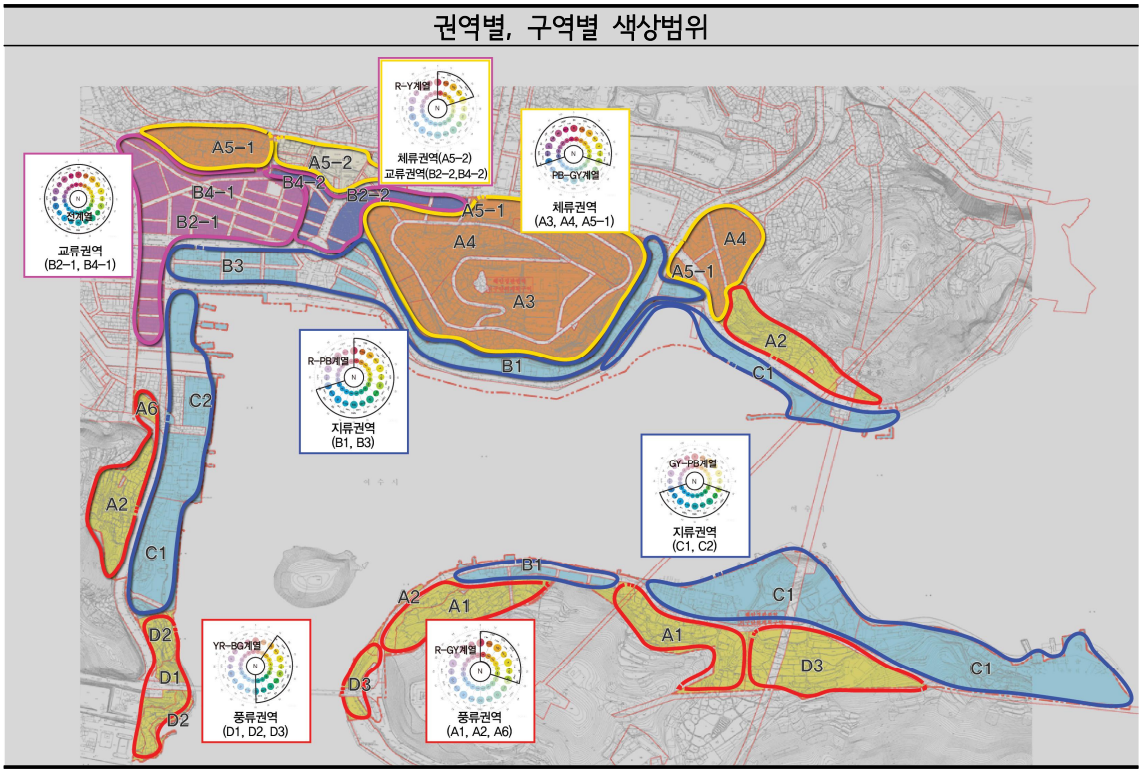

⑤ 지붕색 지정 때 평지붕의 페인트색은 박공지붕재 지정색과 유사한 색으로 적용한다.

⑥ 색채표기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구역별로 먼셀수치와 명도와 채도의 범위를 표기한다.

먼셀 색상환 및 명도,채도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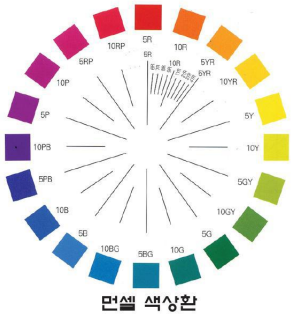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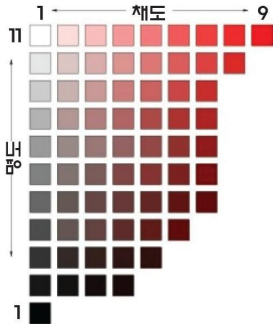

*먼셀 표기 방법

색상	명도	채도
↓	↓	↓
10YR	4 /	2.5

제15조 구역별지침: 주거관리구역(A1, A2, A6)

① 지붕 및 외벽

1. A1, A2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 이하로 하고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하며, A6 구역은 A1, A2구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권장으로 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가급적 지상으로부터 1.2m이내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3.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한다.
4. 창호 및 벽면에 이국적 경향의 문양 등을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5. 광택에 의해 반짝이는 금속계열이나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의 도료 및 재료는 사용을 금한다.
6. 지형의 차이로 가로변에 면하여 축대 또는 옹벽 등을 설치 때에는 자연석으로 마감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주택의 상가활용 시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한다.
2.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한다.
3.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는 녹화,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5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건축물간 조화되도록 유사한 색채를 적용하되 강조색은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주변의 자연소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 생태환경과 조화로움 형성 • 색 범위는 구릉지-녹지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자연의 색인 R~GY계열 적용 • 지붕의 색은 R~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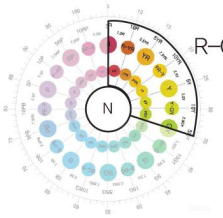	주조색	명도 6~8, 채도 3이하 / R-GY계열	10YR 7/0.5 / 5YR 7/1
		보조색	명도 5~6, 채도 3~6 / R-GY계열	5YR 6/4 / 8.5GY 6/4
		강조색	명도 3~5, 채도 6~8 / R-GY계열	5R 4/6 / 5GY 4/7
		지붕	명도 5~8, 채도 8~12 / R-Y계열	5R 6/12 / 7.5YR 8/10

제16조 구역별지침: 주거관리구역(A3, A4, A5-1)

① 지붕 및 외벽

1. A3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이하, 면적은 70%이상 확보한다.
2. A4, A5-1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2이하, 면적은 40%이상 확보한다.
3.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4.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부 3개층는 조화를 고려하여 저채도의 친환경 소재로 마감한다.
5.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한다.
6. 광택에 의해 반짝이는 금속계열이나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의 도료 및 재료는 사용을 금한다.
7. 지형의 차이로 가로변에 면하여 축대 또는 옹벽 등을 설치 때에는 자연석으로 마감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주택의 상가활용시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한다.
2.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한다.
3.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는 녹화,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10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건축물간 조화되도록 유사한 명도와 채도를 적용하되 강조색은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하여 포인트로 적용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은은한 이미지의 정주성을 강조하는 PB~GY계열을 적용하고, 지붕은 재료에 따라 RP-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로 사용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색 적용 • 고층건물(공동주택)은 위압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명도차를 활용한 단계적 사용 • 벽면의 원색계열사용은 금하고 채도6~10사이를 강조색으로 지정, 사용면적의 10%이내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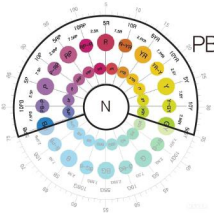

주조색	명도 6~8, 채도 3이하 / PB–GY계열	10YR 7/0.5	5Y 7/2
보조색	명도 5~6, 채도 3~6 / PB–GY계열	5YR 6/2	5YR 5/3
강조색	명도 3~5, 채도 6~10 / PB–GY계열	10R 3/6	2.5GY 4/6
지붕	A4,A5–1 : 명도 4~6, 채도 3~8 / RP–Y계열 A3 : 명도 5~8, 채도 8~12 / R–Y계열	6.5YR 4/6	7.5YR 8/10

제17조 구역별지침: 주거관리구역(A5-2)

① 지붕 및 외벽

1. 지붕은 진남관 기와형식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선형이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이하,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가급적 지상으로부터 1.2m이내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3. 벽면에 친환경 소재로 마감하여 역사지 주변과 조화되도록 권장한다.

4.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경계부에는 주변 도로와 노후된 주거, 판매시설 차폐를 위한 완충역할의 식재를 밀집하여 설치한다.
2.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한다.
3. 역사경관과의 인접지역은 식재림을 조성하여 주거지와의 자연적 경계 조성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광택도 2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3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건축물간 조화되도록 유사한 명도와 채도를 적용하되 강조색은 사용은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역사경관에 부합하는 R-Y계열의 색채 범위를 지정
-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도입하여 인지성 저감 및 역사시설과의 일체감 도모
- 지붕의 색은 전통기와와 어울리는 N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무채색계열 적용
- 벽면의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고 채도 6이상의 강조색은 지양하며, 사용 때 광고물 내에서 사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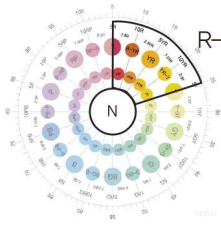

주조색	명도 6~8, 채도 3이하 / R-Y계열	2.5YR 8/2	10YR 7/2
보조색	명도 4~6, 채도 3~4 / R-Y계열	2.5R 6/3	10YR 6/4
강조색	명도 3~5, 채도 4~6 / R-Y계열	2.5R 4/6	10YR 4/5
지붕	N 계열 40이하	N/4	N/3

제18조 구역별지침: 상업활성화구역(B1, B3)

① 지붕 및 외벽

1.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가로를 따라 주변 건물과 일치할 수 있도록 좌,우 인접한 건물과 동일한 형태의 지붕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전면을 제외한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외벽 마감는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자연석재, 도장재, 타일류 등 제한은 없으나, 1개동에 주재료는 5종류 초과 사용은 금지한다. 단, 장식적인 요소 가미인 경우는 추가 허용한다.
4. 외벽에 유리 위주의 사용은 금지하며, 커트널 사용 때 입면적 50%이하로 하여 건축물 외벽 마감의 색상이 노출되도록 조성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가로변에 면한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한다.
2. 건물과 건물사이에 식재 및 차폐물 설치를 지양하여 배후도로에서 해안조망을 향한 통경축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3. 가로변으로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이나 시설물, 사인물, 적치물 설치 금지하고 도로내 보도와 유사한 재료 사용하되 색채 대비로 구분한다.
4. 음식문화거리의 진출입로에 위치한 건축물은 인지성을 위해 다양한 마감이나 구조물 등 특색있는 표현 권장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10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강조색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칼라의 마감재를 적용하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하고 채도10이하를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 색범위는 R~PB계열로 주거와 상업을 혼용하는 칼라 적용
- 보행로와 공지의 바닥 마감은 동일하게 하고 차량이나 주차바닥은 색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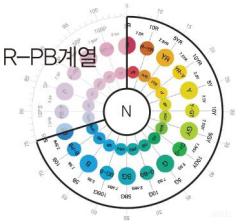

주조색	명도 6~8, 채도 3이하 / R-PB계열	8B 7/1.5	5R 7/1
보조색	명도 4~6, 채도 3~6 / R-PB계열	5B 6/3	5Y 5/4
강조색	명도 3~4, 채도 6~10 / R-PB계열	5PB 4/7	5YR 4/8
지붕	명도 2~4, 채도 4이하 / YR-B계열	3.5B 2/2.5	7.5R 2/4

제19조 구역별지침: 상업활성화구역(B2-1, B4-1)

① 지붕 및 외관

1.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설치 때에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거관리구역(A4, A5-1)과 동일한 기준을 권장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전면을 제외한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외벽은 석재, 도장재, 타일류 등 다양한 재료 사용을 권장하나 1개동에 3종류이상 사용 금지한다.
4. 외벽에 유리 위주의 사용은 금지하며, 커트널 사용시 입면적 50%이하로 하여 건축물 외벽 마감의 색상이 노출되도록 조성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한다.
2. 가로변으로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적치물 등 금지와 도로 내 보도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10이하로 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강조색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칼라의 마감재를 적용하되 고명도, 원색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채도8 이하를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 보행로와 공지의 바닥 마감은 동일하게 하고 차량이나 주차바닥은 색을 분류
- 옥외광고물은 브랜드 고유의 색을 허용하되 배경은 N5계열로 지정하여 일체화된 상업거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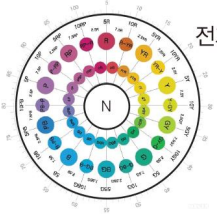

전계열

주조색	명도 7~8, 채도 3이하 / 전계열	8B 7/1.5	5R 7/1
보조색	명도 5~6, 채도 3~6 / 전계열	5R 6/3	5G 5/4
강조색	명도 3~5, 채도 6~8 / 전계열	5PB 4/7	2.5GY 4/6
지붕	명도 2~4, 채도 4이하 / 전계열	3.5P 2/2.5	7.5R 2/4

제20조 구역별지침: 상업활성화구역(B2-2, B2-4)

① 배치 및 형태

1.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 설치 때에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거관리구역(A5-2)과 동일한 기준을 권장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전면을 제외한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외벽은 석재, 슬레이트 등 자연재료나 유사한 색의 뿜칠을 적용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경계부에는 주변 도로와 노후 된 주거, 판매시설 차폐를 위한 완충역할의 식재를 밀집하여 설치한다.
2.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적치물 등 설치를 금지하고, 도로 내 보도와 일체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전통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바닥재 및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5이하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3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강조색은 지양하되 10%이내로 제한하여 포인트로 느껴지게 적용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상업지역이지만 역사경관과 인접하여 체류문화권과 연계된 R-Y계열로 제한 • 지붕의 색은 전통기와와 어울리는 N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무채색계열 적용 • 투과성이 높은 재료의 적용으로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 • 벽면의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고 채도6이상의 강조색은 지양하며, 사용시 광고물내에서 사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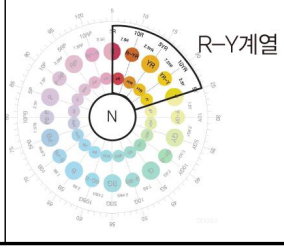

주조색	명도 7~8, 채도 3이하 / R-Y계열	2.5YR 8/2	10YR 7/2
보조색	명도 5~6, 채도 3~6 / R-Y계열	2.5YR 6/3	10YR 6/4
강조색	명도 3~4, 채도 5~6 / R-Y계열	2.5Y 4/6	10YR 4/5
지붕	명도 2~4, 채도 3이하 / YR계열, N계열 3~4	6.5YR 3/3	N/3

제21조 구역별지침: 관광기능유도구역(C1, C2)

① 지붕 및 외벽

1.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 설치 때에는 박공형을 지양하고 벽과 연결되는 현대적인 구조를 권장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옥상녹화는 지양하고 바닥은 방수페인트 노출보다는 타일 등 바닥 마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시설물이나 적재물, 실외기, 설비 등은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에 설치한다.
4. 외벽에 유리 위주의 사용은 금지하며, 커트널 사용시 입면적 50%이하로 하여 건축물 외벽 마감의 색상이 노출되도록 조성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해안으로의 보행축 확보를 위한 공지와 보도를 일체화하고 식재와 시설물의 높이 3m(1개층 높이)이하 설치 및 조망을 고려한 일정한 이격거리 확보한다.
2.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배후 도로에서 해안조망을 향한 통경축과 보행로 확보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5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강조색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관광시설 조성의 일체감을 부여하기 위한 색채를 지정하여 해안위치의 특성과 건물간의 통일감을 고려하여 GY-PB계열로 구성
- 1층은 투과성이 높은 무색상 재료의 적용으로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
- 지붕의 색은 B~G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하며, 컬러강판 사용도 허용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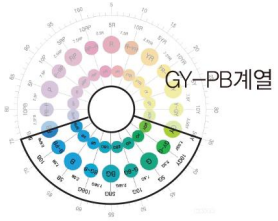

주조	명도 7~8, 채도 3이하 / GY-PB계열	3B 8/1	6GY 7/2
보조	명도 5~6, 채도 3~5 / GY-PB계열	4GY 6/2	5B 5/3
강조	명도 3~4, 채도 4~8 / GY-PB계열	2.5PB 4/6	5GY 4/6
지붕	명도 2~4, 채도 3이하 / B-G계열	6.5B 2/3	7.1G 2/3

제22조 구역별지침: 자연경관구역(D1, D2, D3)

① 배치 및 형태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이하로 조성하고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하며 옥상에 실외기나 적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성한다.
2. 경사지붕 설치시 구릉지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는 형태로 지형과 조화되는 박공지붕 조성한다.
3.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가급적 지상으로부터 1.2m이내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며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벽돌, 석재 등 마감재를 권장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한다.
2.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는 녹화,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3. D1, D2구역의 소나무 군락은 우수한 녹지경관자원으로서 돌산대교 주변의 조망을 고려하여 보전을 권장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5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3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건축물간 조화되도록 유사한 색채를 적용하되 강조색은 주변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주변의 자연소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 생태환경과 조화로움 형성
- 색범위는 YR~BG계열로 적용, 해안에 인접한 지역은 GY~BG계열 사용을 권장
- 지붕의 색은 R~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소재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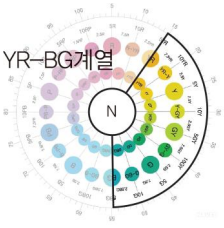

주조	명도 7~8, 채도 3이하 / YR-BG계열	3BG 8/1	6GY 7/2
보조	명도 5~7, 채도 3~5 / YR-BG계열	4GY 6/2	5BG 5/3
강조	명도 3~6, 채도 4~8 / YR-BG계열	2.5YR 4/6	5GY 4/6
지붕	명도 5~8, 채도 8~12 / R-Y계열	5R 6/12	7.5YR 8/10

제6장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사항

제23조 옥외광고물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옥외광고물 설치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한다.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원도심권, 오동도 주변 등)은 해당 고시의 허가(신고)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지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함

② 기본방향

1. 적절한 색채자극으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2. 주변의 환경 및 건물과의 조화를 위해 명도차를 기반으로 한 배색 권장
3. 건물색과 동일색상으로 배경색을 정하고 문자는 명도차이를 두도록 함
4. 하나의 간판에 색채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 사용 자제
5. 단일 건물의 간판 색채는 5가지 이상 사용 자제
6. 입체형 문자를 사용하며 야간에는 흰색의 글자이미지가 보이도록 권장함

③ 표시방법

1. 1업소 1개 가로형 간판을 원칙으로 함{단, 총수량 규제 범위 외의 소형 돌출간판(면적 0.36㎡이하, 두께 0.2m 이하)에 대해 허용토록 하며, 형태 및 내용은 본 지침을 따름}
2.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1개 추가 가능
3. 가로형 간판만 허용하며,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간판의 설치는 금한다.
4. 규격은 업소의 가로폭 80% 이내로 하고 세로폭은 1m내로 한정

④ 형태 및 내용

1. 1 층: 판류형, 바형, 문자형 설치
2. 2층 이상: 바형, 문자형 설치
3. 최 상 층: 문자형 설치
4. 커튼월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벽면에는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입체형으로 표시
5. 내 용: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표기

⑤ 기타사항

1. 색채 및 조명은 권역별 권장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고효율 광원인 led제품 의무 사용

3. 판류형 간판은 바닥면 전체 조명 사용불가
4.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간접조명 방식 권장
5. 입체형 광고물은 광원을 매립하여 표기내용만을 강조

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및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건축행위 포함) 시 본 지침에 의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적정성을 인정받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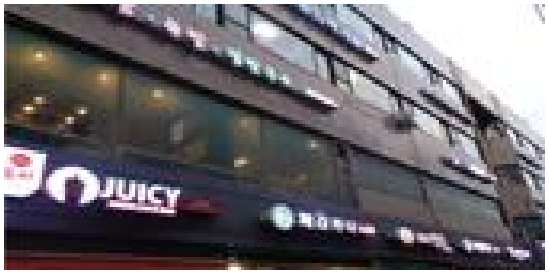

톤온톤 배색 예시

광원이 노출된 점멸방식의 조명간판(×)

판류형 간판전체에 빛이 나오는 내부조명방식 간판(×)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외부조명방식 간판(○)

앞에서 문자를 비추는 외부조명방식 간판(○)

제24조 야간조명

① 주거관리구역(A1, A2, A6), 자연경관구역(D1, D2, D3) [조화롭고 은은한 조명]

1. 구릉지의 마을전체가 통일된 조명계획을 통해 조화를 유도
2. 건축물 조명은 권역별 고유의 색상이 드러나도록 은은하게 조성
3. 안전한 주변 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밝기를 충분히 확보

4. 직접광원의 노출 및 과도한 색상의 변화-반복점멸 금지
5.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도: 6~10lx, 휘도: 1~5cd/㎡적용
6. 주거지와 자연에 어울리는 2500~3000k색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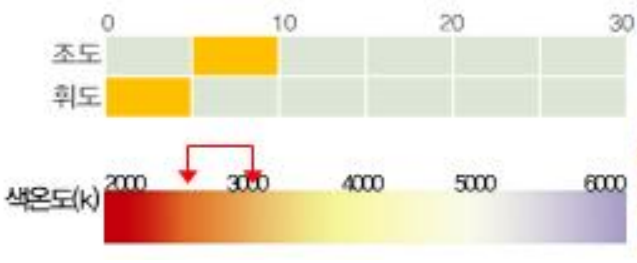

② 주거관리구역(A3, A4, A5-1) [편안하고 안정적인 조명]

1.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지양하고 주거위주를 고려한 무색의 간접조명 활용
2. 고층의 위압감을 줄일 수 있는 저층 위주의 조명 설치계획
3. 안전한 주변 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밝기를 충분히 확보
4. 주거를 고려한 눈부심이 없는 편안한 조도: 11~20lx, 휘도: 6~10cd/㎡적용
5. 주거지와 어울리는 2500~3500k색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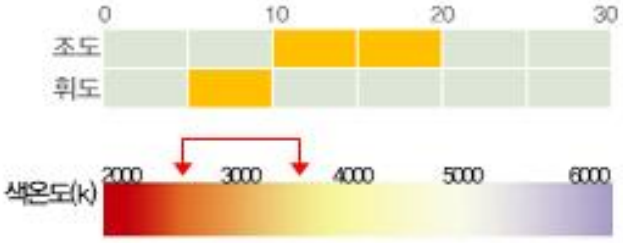

③ 주거관리구역(A5-2), 상업활성화구역(B2-2, B2-4) [온화한 조명]

1.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지양하고 역사지를 고려한 무색의 간접조명 활용
2. 지붕 및 옥탑부 등 일부 강조 조명 지양, 건축물 전체 조명과의 조화 고려
3. 역사문화거점으로서 관광을 고려한 편안하고 균일한 조명 범위 제시
   (조도: 11~15lx, 휘도: 6~10cd/㎡)
4. 역사지 고유의 색과 어울리는 온화한 3000~3500K색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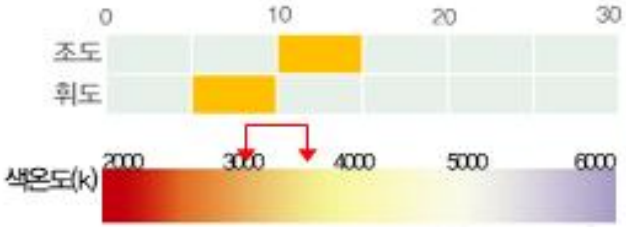

④ 상업활성화구역(B1, B3), 관광기능유도구역(C1, C2) [웅장하고 화려한 조명]

1. 건축물은 간접조명을 통한 매스감을 부각하고 시설물 조명과 연계
2. 건축물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은 지양하고 매스감을 살릴 수 있는 조명계획
3.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도: 15~25lx, 휘도: 11~15cd/㎡적용
4. 건물 고유의 색을 살리는 3000~4500k색온도 및 색채범위와 동일한 조명색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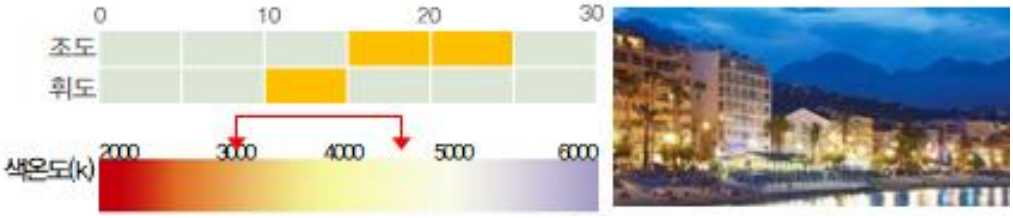

⑤ 상업활성화구역(B2-1, B4-1) [다채롭고 역동적인 조명]

1. 상업활동 및 여가활동 증진 도모를 위한 밝고 쾌적한 빛 환경 형성
2. 광장, 입구에 인지성을 주면서 요란한 점멸방식을 지양한 다양한 조명색상 활용
3. 건축물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직접조명을 지양하고 권역별 고유의 색상이 드러나도록 은은하게 조성
4. 야간에도 활기를 줄 수 있는 조도: 21~25lx, 휘도: 16~20cd/㎡ 적용
5. 관광지의 야간경관을 잘 살리는 3000~4000k색온도 및 색채범위와 동일한 조명색

제25조 자연지반 보존

자연지반은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공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투수콘, 아스콘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26조 옥상녹화

① 옥상녹화 때 벤치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 벽면녹화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에 대해 덩굴성 식물, 지피식물, 초화류 위주로 녹화하는 벽면녹화를 권장한다.

② 벽면녹화 때 식재지 특성에 부합되는 녹화기법을 적용하며 가급적 다양한 식물을 도입하여 단일지역 내에서도 복합적인 식재기법을 강구한다.

③ 대규모 벽면에는 상·하부에 병행 식재하여 조기녹화를 유도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식수대 형태·규모·재료 등을 선정하여 식물생육에 필요한 최소유효토심을 확보하며, 가급적 향토수종을 사용하되 식재지 환경특성에 적응 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다.

제28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8장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① 대지안의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대지면적 및 건축물, 조경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 조례」를 따라야 한다.

② 식재 수종의 지역 향토종은 동백나무로 식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7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0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일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호에 해당)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대지의 여건 및 기존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일부지침 내용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는 기존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계획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은 향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방향에 적합한 지침변경은 재정비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라도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획지침이 상이한 필지를 개발하는 경우 계획지침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규모
   - 건폐율, 용적률: 해당 필지의 면적 대비로 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건축법」 제54조 및 동 시행령 제77조, 「여수시 건축조례」 제30조의 기준에 따름)
   -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 각 부분의 해당 필지별 높이계획에 따른다.
2. 건축물의 용도: 대지의 가장 많은 면적이 속하는 구역의 용도계획을 따른다. 다만, 포함된 각 필지의 면적이 330㎡ 이상 및 자연경관구역에 포함인 경우 각각에 속하는 구역의 용도계획을 따른다.
3.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지침: 대지의 가장 많은 면적이 속하는 구역의 필지별 건축물 형태, 색채 및 외관지침에 따른다.

2 공공부문 시행지침

2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부문에 적용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정내용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안경관권역 내 공공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사업 및 시설에 대한 계획방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내용 규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정내용의 규정

③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도로시설물, 녹지, 주차장, 공공이용시설, 옥외 가로시설물, 포장, 조명, 안내체계 등 공공(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제2조 대상지역

대상지역은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조 구성

공공부문 시행지침에서는 해안경관권역 내 추진 예정인 공공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별 지침을 규정하며,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본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항은 관련법규, 조례, 지침 등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의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지침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본 시행지침을 융통성 있게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④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2019년 수립 예정인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내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을 따르고, 구체적인 적용과 예외사항 등은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되, 공공사업별 세부적인 지침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 지침을 적용한다.

⑤ 본 지침의 "제2장 시설별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각 공공사업별 추진대상 및 내용, 우선순위, 시행방식, 추진부서 등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따르되,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내용 및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부서 및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시행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제2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물

제6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제7조 도로의 설계기준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금지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② 차선폭은 설계속도에 따라 주행차선이 2.75~3.5m, 보도측 차선은 2.75~4.5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③ 도로의 기능제고 및 해안변 가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을 위한 보도 및 보행자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④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부는 가로수, 식수대, 가로장치물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한다.

제8조 버스 및 택시 정차대

① 버스정차대 폭은 2-3m를 확보하고, 동시 정차대수를 2-4대를 기준으로 정차 대수 당 15m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버스정차대는 보행집산과 대기장소이므로 교통표지판, 안내판, 가로판매대, 벤치겸 식수대, 보행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한다.

③ 정차장 진입부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구간(약 20m내외)은 가로장치물 및 교목식재를 배제한다.

④ 버스 및 택시정차대는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혼잡이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제9조 과속방지시설

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③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행우선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④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 색으로 채색하도록 한다.

원형 험프	사다리꼴 험프: 보도이용	교차로 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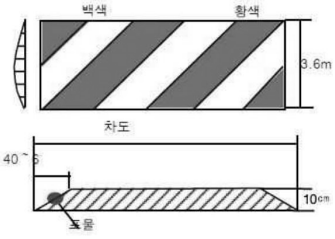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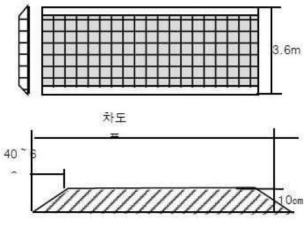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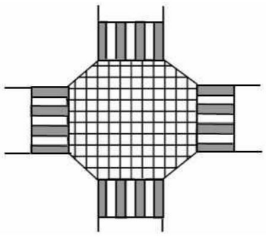

제10조 횡단보도

①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② 일반적 설치간격은 100m이하로 계획하고, 교차로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가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 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한다.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한다.

④ 횡단보도의 폭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도로유형별 횡단보도 폭원

도로의 유형	횡단보도 폭원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10~12m
집산도로	6~10m
국지도로	4~6m

제11조 가각전제 및 보차로 경계선의 회전반경

일반적으로 가각전제 및 보차로 경계선의 회전반경은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성한다.

제12조 교통신호등

①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교차로 및 횡단보도 외에서의 교통신호등의 설치간격은 간선도로의 경우 400~500m, 집산도로의 경우 200~300m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제13조 이면도로

① 이면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진출입 및 교차부는 도로의 인식성을 고려하여 조형물, 수경시설 등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보도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황여건상 보도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에는 보차경계부에 단주, 열주, 게이트 등을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보차경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④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비상시의 차량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크지 않도록 한다.

⑤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거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통진정시설을 적절히 배치한다.

구 분	설치방법	비 고
차도폭줄임 (Choker, Pinch-Point)	• 차도의 한쪽, 또는 양쪽을 부분적으로 좁혀 일정구간 도로폭을 줄임	• 차량속도감속, 보행자의 횡단 거리축소, 노면주차공간 확보
차도꺾기 (Chicane)	• 도로의 선형을 곡선(Slalom) 및 지그재그형태(Clank)로 굴절	• 차량속도감속, 교통량 감소, 일정규모 폭원확보 도로가능
노면요철포장 (Rumble Strip)	• 좁고 긴 띠 모양의 요철을 일정 간격으로 두고 통행차량에 진동을 발생	• 좁은 폭원의 도로도 가능, 비용 저렴
차도높음 (Hump)	• 차도포장을 부분적으로 높게 올려 차량속도 제어, 교차로 들어올리기(Raised Junction Hump)방식과 원형험프, 사다리꼴 험프 등	• 교차로의 식별성과 안정성 확보, 횡단보도와 결합 보행편의 제공
미니로터리	• 로터리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국지도로에 응용, 중심에 식수를하여 차량의 직진 진입을 방지 속도제어	• 일반차량 및 비상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 입면 및 평면설계, 주요 결절점에 엑센트 요소로 설치 장소성 부여

제14조 골목길(보행자전용도로)

①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로, 분리녹지, 휴게녹지로 구성하며 인접차량동선과 분리되도록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 배치, 포장은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특화되어야 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의 분절을 막고 시각적·기능적으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조성하며,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시설을 배치함으로서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 연변상황에 따라 적정규모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비합리적 보행동선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행 시 방향감과 쾌적함을 제고할 수 있는 식재, 포장, 시설물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도시안내 표지시설

제15조 적용범위

① 도시안내 표지시설은 보행안내시설과 차량안내시설로 나누어 지침을 작성한다.

②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개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 표지규칙」,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6조 보행안내체계 조성방식

①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 설계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적 보행결절부와 주요시설물 진입부에 집단 배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정보의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기하여 동질성과 조화를 갖게 하여 효율적 안내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른 가로장치물과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안내표지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 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⑥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행안내체계 표기내용

보행자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현위치
2. 현 위치에서의 반경거리
3. 교통수단과의 연계상황
4. 가로망, 블록구성, 주요시설 등

제18조 보행안내체계 설치위치

① 보행 결절점이나 교통 결절점에 종합안내시설을 배치하여 지구전체에 대한 정보와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으로 계획하여 여수시 전체의 주요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②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지구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보권내에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④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선과 인접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사설안내 표지판의 난립으로 인한 식별성 및 경관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규칙에 따라 규격,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여 동일성격의 표지판을 한곳에 집중 설치토록 한다.

보행안내판 설치위치 및 내용

구분	설치위치	안내내용	형태/재료/색채
종합안내	• 주요 교통결절점 (지하철역, 주간선교차로 등) • 주요 공공시설 • 도시적 시설	• 구역전체의 교통망 • 주요시설 위치	• 심볼·로고 등 그래픽 사용, 전체의 시각적 질서감 표현 • 동판, 알루미늄판 등 • 안내표지판의 야간이용을 위해 조명등 고려
지구안내	• 주요 보행결절점 (정류장 주변, 시장, 보행통로 및 도로) • 공공공지 등	• 생활권별 교통망 안내 • 보행권의 안내	• 식별성·지역이미지 고려, 심볼·로고 활용 • 동판, 알루미늄판 등 • 안내표지판의 야간이용을 위해 조명등 고려
방향안내	• 보행자도로 접속부 • 횡단보도 • 공공시설 주변	• 유도 화살표에 의한 방향표시 • 이정표시	• 장식적·조형적인 형태, 심볼, 로고 활용 • 동판, 알루미늄판, 칼라스테인레스 등
기타	• 버스정차장 • 택시정차장	• 버스노선 안내 • 시설 안내	• 정류장 쉘터와 조합을 고려

제19조 차량안내체계 조성방식

①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

② 명명체계는 명명단위 우선순위를 지역명-시설명-도로명-지구명 순으로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적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지구단위구역 내 일방통행체계 구축에 대비하여 일방통행로 진입부에 차량안내기둥(색채·조형 고려)을 설치한다.

제20조 차량안내체계 표기내용

차량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진행방향 지명
2. 전방에 교차할 도로의 이름
3. 전방교차지점까지의 거리

제21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① 교통안내표지판의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교차로와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차량안내 설치기준

구 분	명 명 체 계	표시내용
지역명	• 외곽지역 연결도로와 교차하는 간선도로변의 교차로에는 지역명을 표기하여 외곽지역으로의 방향을 지시한다. • 원거리명과 근거리지명을 동시에 표기할 경우 원거리 지명을 위쪽에 표기한다.	지역명칭 대표장소 지역소개
시설명	• 지역안내의 목표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은 지명도가 높아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을 중심으로 한다. • 시설명을 지명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적으로 표기한다. • 시설물의 2-3개 전방교차로부터 표기한다.	주요지역명 대표적시설명 교통시설 환승방법
도로명	•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목적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도로명으로 표기한다. • 진행방향은 도로명을 표기하고 좌우측에는 도로명 혹은 지역명을 표기한다. • 방향 및 예고표지에는 진행방향과 교차방향의 노선번호를 표기한다.	행선지명 가로명
지구명	• 도시전체의 일관된 지구명의 체계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이용권, 개발밀도, 경관적 요소 등 동일한 경관 인식단위를 지구명의 기본단위로 한다. • 지구 내부도로에서는 지구명을 다른 위계에 우선하여 표기토록 하되 지구 경계선 교차로에는 인접 지구명을 표기한다.	단지명 (동네명) 지구내 가로망 방향

② 규제·지시표지는 규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표지는 위험지구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 전방에 배치한다.

③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 진출입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 도로표지판 설치방식

① 도로표지판의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으로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② 운전자가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③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 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④ 도로표지판의 설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가로식재

제23조 가로수 수종선정

①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②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③ 이식이 용이하고 성장속도가 빨라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④ 꽃가루 등에 의해 인체에 알레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수종은 배제한다.

제24조 가로수 식재방법

① 도로폭 15m이상, 보도폭 3m이상의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한다.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④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며 수목을 통한 지역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식재방법

구분	예시도
• 정형규칙 식재 - 가로변 등 공간이 선적이 장소 및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한 외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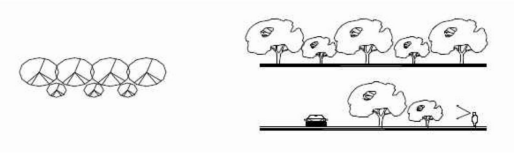
• 고립식재 - 광장 등 상징성과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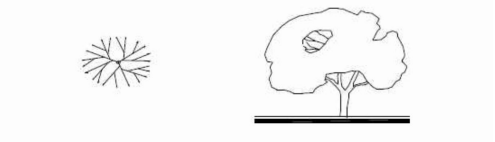
• 녹음식재 - 휴식공간, 공원 등 비교적 넓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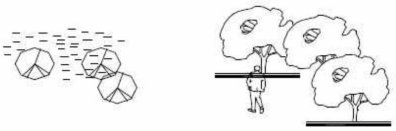
• PLANTER에 의한 화초류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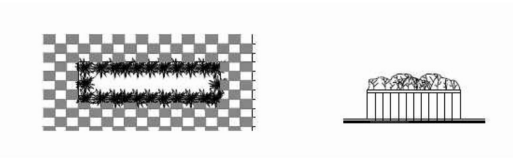
• 밀식식재 - 주차장 차폐, 생울타리 등이 필요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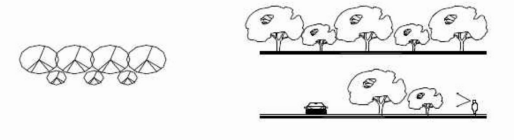

제4절 가로 장치물

제25조 설계기준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자료, 색상을 통합·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전략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가로 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도로성격에 따라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배치유형을 도출하여 가급적 통합설치하여 보도 구간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④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6조 방호 울타리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가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제27조 볼라드

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도로의 경계부, 보도 등의 진입부에 설치하며 1~2m정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

② 야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볼라드를 설치한다.

③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각부분 보도로의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고 비상시 차량진입을 위해 이동식을 권장한다.

제28조 벤치

① 벤치는 기하학적 배치와 단순 평형배치 등 장소의 특성에 맞게 배치한다.

② 가능한 한 보행자통로, 공개공지 등의 식수지역 내에 설치하여 주보행동선과의 마찰을 피하도록 한다.

③ 벤치의 형태는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타 시설과 조합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제29조 휴지통

① 보행량이 많은 주요 시설물 주위나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 등에 집중 배치한다.

② 수거에 용이하고 위생을 고려한 형태로 고안한다.

가로장치물의 유형별 종류와 설계방안

구분	기본유형	시설물 종류	설치 여부	설계시 주요유의사항
휴게 시설	파고라	사각, 반원형, 장방형등	○	• 표면 및 방부처리 • 플랜터, 하부벤치, 기타편익시설의 조합고려 • 공간적 안정감 및 위요감 형성
	쉘터	택시 쉘터, 일반휴게 쉘터	○	• 신소재 개발 • 보행결절점, 경관우수지역, 넓은 휴식장소 배치
	벤치	등의자, 평의자, 연식의자	●	• 보도로부터 2m이상 이격설치 • 장소적 특성 및 주변시설과 조합화필요 • 보행로, 공공공지 가로변에 설치하되 주보행동선과 마찰 배제
편의 시설	휴지통	휴지통 및 재털이	●	• 휴게시설과 조합, 수거방식개발 • 수거, 통풍, 건조가 용이한 구조 • 재활용과 수거용으로 구분설치
	우체통	우체통	○	-
	공중전화	공중전화	●	• 야간조명, 신소재 개발활용 필요 • 4개 이상 설치 시 장애자용 1개설치
	음수전	소형, 대형	○	•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 증진필요 • 그늘진 곳, 습한 곳,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 피함 • 성인용100-110㎝, 아동용60-70㎝높이로 통합설치
	키오스크	가판점, 안내소	○	• 조명, 단열방식 개선 필요 • 장소별로 설치개소를 제한
	시계탑	고정식	○	•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지표적 성격으로 배치 • 높이는 2.5m이상으로 장소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형태, 정보 표기
경계 및 기타 시설	문주, 담장	문주, 담장	○	• 장소별로 다양한 소재(목재, 유리, 알루미늄)사용
	볼라드	이동식, 고정식	○	• 조명 및 벤치겸용 고려 • 1-2m간격으로 배치하되 비상시 차량통행허용
	화분대	화분대	○	• 경량자재 개발 필요 • 장소별로 이동식과 고정식을 구분배치

※ ● 필히 설치 / ○ 필요시 설치

제5절 포장

제30조 재료 선정기준

① 견고하고 내구성을 갖춘 재료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 및 보수가 용이한 재료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 차량 하중에도 견디는 재료

④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다우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물성에 변화가 없는 재료

⑤ 가로의 특수한 환경에 부합되는 특성 있는 재료

⑥ 염가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구입이 용이한 재료

⑦ 각 가로의 특성(identity)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재료

⑧ 보도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수성이 양호하고, 환경친화적인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제31조 조성방식

① 가로의 일정공간 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일정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② 장소별 특징을 가진 포장패턴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 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포장설계 지침

구 분	포장지침	포장재료
이면도로	• 위계가 다른 도로와 구분할 수 있는 재료 • 저속으로 속도제한 할 수 있는 재료 • 보행의 쾌적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보도)	• 색아스팔트 • 투수콘 • 콘크리트 • 우드블록(보도)
주·정차 구간	• 주차선과 구분이 되도록 재로 또는 색을 다르게 사용	• 색아스팔트 • 투수콘
횡단보도	• 시각장애자를 위한 촉감있는 재료 사용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친 질감의 재료 사용	• 점자블럭

제32조 패턴 및 질감의 적용

① 포장의 폭과 줄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

② 격자형 패턴은 중립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곳에 사용을 유도하고 공간의 확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패턴을 권장한다.

③ 포장패턴은 건축물 및 부지 내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④ 공간을 상호간으로 대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선과 곡선의 반복 이용 및 이중질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⑤ 단위줄눈의 크기가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패턴은 안정감이 있으므로 휴식·기다림의 공간에 사용한다.

⑥ 이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포장패턴은 율동적이고 운동감이 강조되는 포장패턴을 사용한다.

제33조 보도 포장기준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당 가로에 관련하여 포장재의 형태 및 규격은 가로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② 공공부문의 포장원칙은 통일성과 조화의 유도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 포장기준보다는 우선순위를 둔다.

③ 가급적 전면 재시공은 피하고 기존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형을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제34조 사후관리

① 민간·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 때 공사완료 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완료 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6절 통합지주의 설치

제35조 통합지주의 설치

①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와 통합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내력, 풍압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제시한 시설물외에 안내시설, 정보시설 등 각종 도시편익시설의 통합화를 시도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예, 볼라드와 조명등 겸 벤치, 수목보호대와 벤치, 플랜터와 조명시설 등)

④ 통합지주에 복합설치 될 교통안전표지의 후면은 미관을 고려하여 심볼, 표어 등을 도식하여 가로경관을 제고시킨다.

통합지주의 설치기준

설치위치	설치시설	통합시설
교 차 로	신호등	• 신호등, 주요도로 및 지점안내표지, 가로등(횡단보도 신호등), 기타 부착물
교차로 전방 30m이내	가로등	• 가로등, 방향표지
교차로 전방 100~150m	가로등	• 가로등, 방향예고표지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기타 일반도로구간	가로등	• 교통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표지) • 가로등, 보행안내표지

⑤ 통합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1. 가로등+신호등
2. 가로등+3방향표지
3. 가로등+3방향예고표지
4. 가로등+교통안전표지(지시표지)

제7절 주차장의 설치

제36조 주차장의 설치

①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및 여수시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한다.

② 지침상의 규정외에는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한다. 단,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절 조명

제37조 가로등 설치방식

① 가로등시설은 도로의 성격, 기능, 위계(폭원)에 따라 적합한 배열방식, 높이, 색상 등을 달리한다.

②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중앙가로등과 가로변 가로등을 병열로 마주보기식으로 설치한다.

③ 구역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로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 보강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제38조 가로등 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하며, 광원, 조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구역별 지침 색상을 따른다.

③ 가로변에는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곡선부로타리,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구역별 지침 색상에 맞게 유도·조정한다.

제39조 야간조명의 강화

① 야간보행등을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교차로부에 보차도 경계석은 형광물질이 부착된 것으로 교체하여 야간에도 쉽게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야간 보행밀도가 많은 해안변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 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한다.

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키며, 광원, 조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구역별 지침 색상을 따른다.

④ 공공이 민간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하고 일정규모(3층)이상의 건축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 결정도서의 작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지침 및 예시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상세 도서를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침의 변경 및 완화

① 본 지침에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 계획설계 등 상세설계(현상설계 포함)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개선된 공공부문계획이 수립된 경우
2. 현상설계 등을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교통영향평가, 교통관련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4. 지침을 변경 및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 목적 달성에 좀 더 나은 방안이 제시된 경우
5.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③ 공공부문 사업시행 시 「여수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은 여수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